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실시 -
2017년 채용분야 감사결과

I. 감사개요

1. 감 사 명 : 2017년 광주도시철도공사 채용분야 감사
2. 감사범위 : 2013년 ~ 2017년 까지 채용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가. 감사기간 : 2017. 12. 11. ~ 12. 14.
 - 나. 감사인원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소속 2명, 행정안전부 소속 1명

II. 감사결과

1. 지적사항 : 1건(직원 채용 부적정 등)
2. 처분사항 : 행정상 처분 3건, 신분상 처분 2건

행정상				신분상		
계	주의	개선	권고	계	기관장경고	경고
3	1	1	1	2	1	1

III. 지적사항 세부내역 (1건)

1. 제목 : 직원 채용 부적정 등

2. 지적내용

가. 2017년 무기계약직 채용 부적정

- 공사에서는 2017. 9. 1일자로 「계약직 근로자 관리내규」 제6조 (인원관리)를 개정하여 계약직의 직종과 업무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직 종	'17. 9. 1. 이전 업무내용	'17. 9. 1. 추가된 업무 내용
역 무	①영업업무 ②역사내 시설물 점검 및 확인 ③안전관리 ④역사 내 청결 및 그 밖의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기타사무관리 보조업무
시 설 (본사시설)	①사옥내 제반시설과 장비 유지관리 보수 ②사옥 옥내외 전반에 대한 청소 ③그 밖의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주차포함)	①주차장 차량출입통제 등 ②업무용 차량관리 및 운용

- 해당 내규 개정 이전인 2017. 7. 10. 무기계약직 채용공고를 하면서 사무직을 역무직종에 포함하였고, 합격자중 2명을 역무업무와 관련 없는 사무업무로, 1명을 시설업무와 관련없는 운전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계약직근로자 관리내규의 직종과 다르게 합격 후 임용
- 또한, 공사 「인사규정」에서는 임용후보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순으로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역무(사무 포함)직종을 임용하면서 후순위 임용후보자를 선순위자 보다 우선하여 발령

나. 2017년 무기계약직 채용시 표준점수제 운영 부적정

- 채용시에는 응시자에게 평가기준 등을 공개하고, 자체규정 등을 준수하며, 인사 관련 중요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 하지만, 공사에서는 2017년 무기계약직을 채용함에 있어 면접대상자가 411명으로 과다하여 동일 면접위원이 전체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유로 2017. 7. 10. 채용공고문에 표준점수제를 실시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고, 채용공고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2017. 8. 1. 내부방침만으로 면접시험 시행계획에 따른 표준점수제를 운영하기로 결정
- 그 결과 면접시험 종료후 합격권에 동점자 3명이 나와서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우선 채용순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채용공고 이후 마련한 내부방침에 따라 표준점수제 적용하여 합격처리

다. 신규직원 채용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 2016년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위원으로 외부2명과 내부1명을 위촉하면서 최종 면접대상자에 공사근무자(기간제근무자)가 있었음에도 내부위원인 공사 ○○○장을 제척하지 않음

라. 채용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직원채용을 위한 시험위원 위촉시에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심사위원을 바꾸어 선정하고, 서류전형 심사위원과 면접시험 심사위원을 구분하여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 공사에서는 2015 ~ 2016년 정규직과 기간제의 결원 충원과 관련하여, 2015년 제1회 기간제 공채시험에서 ○○○시험위원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모두 참여하였고, 내부위원인 ○○○는 2015년 제2회 채용과 2016년 제1회 채용시 서류와 면접 심사위원으로 모두 참여하였으며,

- 2015 ~ 2016년까지 총 27명을 채용하면서 심사위원으로 ○○○ 6회, ○○○ 4회, ○○○ 2회, ○○○ 2회, ○○○ 2회를 참여토록 하는 등 공사직원 채용에 반복 심사토록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 확보노력을 하지 않음

마. 면접시험 채점표 관리 부적정

- 2013년 신규직원 공개채용시 면접채점표 1건이 오기되어 새로 출력된 채점표로 교체하여 작성하였는데, 당초 작성한 면접채점표를 보관할 경우 채점표를 수정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 채점표를 보관하지 않음

바. 추가합격제 운영부적정

- 추가합격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공사 인사규정에 의거 최종 임용자가 임용포기·결격사유·중도포기 등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 때에만 운영해야 함
- 하지만, 공사에서는 2016년 신규직원 채용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채용직무분야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합격제를 운영한다고 공고를 하였고,
- 채용공고 이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공사직원이 의원면직 되자 추가합격제를 통하여 공채 시험 응시자 중 면접시험이 높은 순으로 2016년 1명, 2017년 2명 등 총3명을 추가합격자로 선발하여 임용함으로써 추가합격제와 관련 없는 자가 임용되게 하였음

3. 조치할 사항

가. 행정상 주의

-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과 「공사 인사규정」 등 자체규정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

나. 행정상 권고

- 공사에서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시행중인 「추가합격제」는 신규 채용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고, 그 수혜자와 범위가 불분명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하거나 폐지

다. 행정상 개선

- 현재 채용관련 심사위원 선정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자체 규정 등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라. 신분상 경고

- 신규 직원 채용을 하면서 채용 절차와 면접 심사위원 선정, 추가 합격제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장 ○○○(현 ○○○장)을 ‘경고’ 조치

마. 신분상 기관장 경고

- 신규 직원 채용을 하면서 채용 절차와 면접 심사위원 선정, 추가 합격제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기관장 경고’